인 사 규 정

제정 2021. 8. 27. 규정 제3호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인천메트로서비스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직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임용"이란 채용, 승진, 전보, 전직, 직무대리, 겸직, 파견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강등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 등 일체의 인사발령을 말한다.
 - 2. "직군" 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.
 - 3. "직위" 란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.
 - 4. "STEP" 이라 함은 직무의 단계를 말한다.
 - 5. "승진" 이란 현 STEP 보다 상위 STEP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
 - 6. "보직"이란 직원에게 STEP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.
 - 7. "전보" 란 동일한 직군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.
 - 8. "전직"이란 직군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
 - 9. "정직"이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.
 - 10. "직위해제" 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 - 11. "강등" 이라 함은 현 STEP 아래의 STEP으로 내리는 것을 말한다.
 - 12. "복직"이란 정직, 강등,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.
 - 13. "면직" 이라 함은 회사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4조(직원의 구분) 직원은 사무직, 역무직, 시설직, 청소직으로 구분한다.
- 제5조(임용권자) ① 대표이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임용권 및 징

계권을 가진다.

-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6조(결원보충 방법)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채용, 승진, 전보 또는 전직의 방법에 의한다.
- 제7조(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직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회사 내에 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- 제8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 - 1.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중요 인사정책
 - 2. 채용, 승진에 관한 사항
 - 3. 포상, 직권면직, 징계, 전직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인사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요구한 사항 심의

제2장 채용

- 제9조(채용)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직군별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에 의해 채용 할 수 있고,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대표이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임용할수 있다.
 - 1.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 한 해당 분야의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
 - 2.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
 - 3. 다른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
 - 4. 긴급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은 제한경쟁시험 또는 서류전형, 면접전형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
 - ③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또는 인턴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자격기준, 채용절차, 보수, 복무관리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.

- 제10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 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6.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7.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8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9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10.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판명된 사람
 - 11. 병역기피자(군복무 이탈자 포함)
 - 12.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1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
 - 14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②시험합격자 중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나 비위 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수습임용) ①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3월로 하며, 특별한 면직사유 가 없는 한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 - ② 제1항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 - 1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
 - 2. 사규를 위반한 경우

- 3.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때
- 4.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
- ③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,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직원기준 보수의 100%를 지급한다.
- 제12조(근로계약)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인사기록) ①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 인사기록카드는 문서 또는 전산처리의 방법으로 관리한다.
- 제14조(채용계획의 사전협의) 대표이사는 임·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계획을 공고일 이전에 인천교통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, 변경된 경우에도 인천교통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장 보직

- 제15조(보직) ① 대표이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규 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② 직원은 회사의 정당한 보직명령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정직 이상은 3년, 정직 미만은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.
 - ④ 대표이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, 해당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 또는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임용할 수 있다.
- 제16조(전보) 대표이사는 직원이 동일직위에서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전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7조(전직)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군별 결원 범위내 에서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.
 - 1.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 - 2. 전직예정직군에 관련되는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
 - 3.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- 제18조(겸직)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직무를 겸직시킬 수 있다.

- 제19조(파견)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.
 - 1.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
 - 2. 대외기관 및 국외에 파견을 요할 때
 - 3.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의 파견근무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원소속에 복귀토록 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직위해제)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
 - 2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. 단.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.
 - 3. 지휘계통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불복한 자
 - 4. 직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 - 5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
 -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④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월 이내의 대기를 명령할 수 있다.
 - ⑤ 제4항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1조(휴직자 등의 결원충원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 직중 일 때에는 정원 외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 - 1.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 중인 경우
 - 2.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
 - 3.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중인 경우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과 동시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.

제4장 승진

- 제22조(숭진의 원칙 및 관리) ① 승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, 근무성적평정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.
 - ② 승진시기, 승진방법 등 승진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
- 제23조(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) ① 직원이 차상위 Step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Step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별표 1과 같다.
 -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, 징계처분기간 및 제25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한다.
 - 1. 제31조제1항제2호·제3호·제5호·제6호 및 제2항제1호·제3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. 다만,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은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으로 하되,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.
 - 2.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 계처분이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나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가
 - ③ 최저승진 소요년수가 경과된 직원 중 승진서열명부상 결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로 최종 결정하여 승진 임용한다.
- 제24조(특별승진)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승진 할수 있다.
 - 1.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
 - 2. 수입증대 또는 경비절감 등 경영개선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
 - 3.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
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 기간의 1/2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

-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
- 제25조(승진임용 및 승진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.
 - 1. 징계의결요구·징계처분·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경우
 - 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. 강등 및 정직 : 18월

나. 감봉 : 12월

다. 견책 : 6월

-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
- 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.
- ③ 강등과 정직 및 감봉처분기간은 제23조의 승진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제5장 근무평정

- 제26조(근무평정) 회사는 정기적으로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한 결과를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단, 시기 및 세부적인 방법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
- 제27조(평정 제외대상) ① 근무평정은 전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제외한다.
 - 1. 휴직, 복직, 직위해제 등 기타 사유로 근무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
 - 2.3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사람
 - ② 전보된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평정 기준일 현재 보직 변경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전 소속 부서에서, 3개월 이상일 경우 현 소속 부서에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.
- 제28조(평정시기) 근무평정은 평정기간 종료(매년 12월말)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.
- 제29조(평정자와 확인자) 근무성적평정은 이를 평정자와 확인자로 구분하여 평정하며, 평정자와 확인자는 피평정자의 상위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정한다.
- 제30조(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)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장 휴직 및 복직

제31조(휴직 사유 및 기간) ①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

-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- 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
- 2.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요할 때
- 3.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및 법률에 따른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
- 4. 천재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- 5.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
- 6.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
- ②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,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1. 회사의 필요에 따른 직무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,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 시 고용될 때
- 2.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
- 3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
- 4.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직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6월 이내
- 2.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2년 이내
- 3.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징집, 소집 또는 동원기간
- 4.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6호의 경우는 3월 이내
- 5.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3년 이내
- 6. 제2항 제3호의 경우는 3년 이내(1회 분할사용 가능)
- 7.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는 3월 이내
-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제32조(휴직자의 대우)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-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1조 제1항 제2호·제3호·제5호·제6호 및 제2항 제1호·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제33조(복직)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,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대표이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당시의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 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.
 - ③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직기간 종료 또는 소멸일로부터 당연퇴직 처리한다.

제7장 퇴직 및 해고

- 제34조(정년) ① 사무직, 역무직 및 시설직의 정년은 만 62세로 하고, 청소직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의한 정년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말일로 하며 퇴직일은 근무일로 한다.
- 제35조(신분보장) 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,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- 제36조(의원면직)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사람과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 계류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이 인정될만한 사유로 조사 중인 사람은 당해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원면직할 수 없다.
- 제37조(당연퇴직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한다.
 - 1. 정년에 도달한 경우
 - 2. 사망한 경우
 - 3. 제10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경우
 - 4. 기타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

- 제38조(직권면직)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
 - 1. 신체 ·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
 - 2.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 - 3.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
 - 4.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 직신청 기일내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
 - 5.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
 - 6.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
 - 7. 징병검사, 입영 또는 소집 등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
 - 8. 제2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교육훈련 등을 이수하고도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
 - 9. 금치산,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

제8장 복무

제39조(복무)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취업규칙」에 따른다.

제40조(급여 및 퇴직금)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「보수 및 복리후생규정」에 따른다.

제10장 상 벌

- 제41조(포상)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포상하다.
 - 1. 회사의 업무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
 - 2.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사람
 - 3.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사람
 - 4. 기타 회사의 모범이 되는 등 포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
 - ② 포상은 근속상, 공로상 또는 모범상으로 구분한다.

- ③ 포상은 그 공적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 - 1. 표창장 및 부상 수여
 - 2. 포상휴가(3일 이내) 부여
- 제42조(포상제한) ①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징계요구, 징계처분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
 - 2. 징계처분 등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가. 강등 및 정직 : 18월
 - 나. 감봉 : 12월
 - 다. 직위해제 및 견책(징계감경에 따른 경고 포함): 6월
 - 3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- ② 제1항의 포상제한 기준일은 포상추천기간 만료일로 한다.
- 제43조(공적심사) 표창에 의한 공적심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.
- 제44조(장계) ① 회사는 직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 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다.
 - 1.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규정, 서약서 및 정상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
 - 2.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
 - 3.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
 - 4.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할 때
 - 5. 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. 단, 최종 무죄 판결 시에는 징계가 소멸되어 자동 복직된다.
 - 6. 출·퇴근이 일정치 않아 연간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고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
 - 7. 도박, 풍기문란, 음주, 성희롱, 폭언, 폭행 등 직무 규율을 문란케 한 경우
 - 8. 기타 별표 2에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- ② 자가운전자가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주의, 경고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지 않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

분한다. 다만 그 내용이 경미할 경우 개인별 처분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 재심사건의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, 위원 구성은 달리해야 한다.

제45조(장계의 종류 및 효력) 징계는 경징계(견책·감봉), 중징계(정직·강등·해임)로 구분 하고, 정직은 15일 이상 3월 이하로 하되, 15일 단위로 적용하고,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며, 징계기간 중의 급여는 「보수 및 복리후생규정」에 따른다.

1. 해임 및 파면 : 직원의 신분을 박탈함을 말한다.

2. 강등 : 직원의 STEP이 1단계 아래로 내려가고 정직 3월에 처분되는 것을 말한다.

3. 정직 :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4. 감봉 :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함을 말한다.

5. 견책 : 직원의 과오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. 그러나 견책처분이 3회 이상 에 달할 때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46조(징계기록의 삭제) 정직, 감봉, 견책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이 종료된다음 날로부터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징계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. 단, 제2호의 경우는 감봉처분이 종료된날로부터 적용한다.

1. 강등 및 정직 : 3년

2. 감봉 : 2년

3. 견책 : 1년

제47조(징계부가금)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액·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

제48조(징계사유의 시효)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 단, 공금의 횡령, 유용 및 금품·향응수수의 경우는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.

제49조(징계양정의 기준) 직원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, 금품 및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제50조(징계절차) ①징계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하며,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
- 1.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,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2.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해당 직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,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 여야 한다.
- 3. 위원회는 참석한 징계위원들이 서명, 날인한 결정문을 작성하여 조합과 회사 및 징계대상 직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- ②직원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분통보를 받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51조(재심청구)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관련 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,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확정 통보한다. 다만, 확정통보가 있을 때까지 당해 징계처분은 유효하다.
 - ③ 제2항의 재심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며, 재심결과의 효력은 원처분일로 소급한다.

제11장 교육훈련

- 제52조(교육훈련) ① 회사는 직원의 자질 및 업무지식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내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해 교육과 관련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- 제53조(교육훈련 평가의 활용) 교육평가 결과는 고과, 보직, 이동 등의 제반 인사자료로 유지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.

제12장 보칙

제54조(권한의 위임) 대표이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 또

는 현업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55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관련사규에 의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인천교통공사 역무도급 노동자 고용전환 관련 노·사·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에 관한 특례) ① 합의일을 기준으로 도급역에 재직(휴직 포함) 중인 통상부역장·근무책임자는 STEP2, 조원·통상근무원·시설관리원(청소)은 STEP1으로 한다.
 - ② 2019년 2월 28일 이후 도급역 입사자를 대상으로 결원인력 보충을 위하여 2021년 10월 부터 12월 까지 기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.
- 제3조(인천교통공사 역무도급 수급인에 관한 특례) 인천교통공사 역무도급 수급인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교통공사와 역무도급 수급인과의 계약해지합의서를 반영한다.
- 제4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승진 최저소요 기간

(제23조 제1항 관련)

		Step별 숭진에 걸리는 최저소요기간								
직군별 직무등급		Step5 Step4		Step3	Step2	Step1				
사무직	G4	-	5년	4년	3년	2년				
역무직 시설직 청소직	G1~G3	-	6년	5년	4년	3년				

징계양정기준

(제49조 관련)

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	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 고 고의가 있는 경 우	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의 도가 경하고 중과 실인 경우	고 경과실인 경우
1. 성실의무위반 가. 공금횡령, 유용, 업무 상 배임	파면	파면-해임	해임-정직	정직-감봉
나. 직권남용으로 타인	파면	해임-강등	정직	감봉
의 권리침해 다.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	파면	해임-정직	감봉	견책
라. 채용비위 마. 기타	파면 파면-정직	해임-정직 감봉	감봉 견책	견책 경고-주의
2. 복종의무위반	파면	해임-강등	감봉	견책-경고
3. 직장이탈금지 위반	해임-정직	감봉	감봉	경고-주의
4. 친절공정 의무위반	파면-정직	감봉	감봉	견책-경고
5. 비밀엄수 의무위반	파면	해임-정직	감봉	견책-경고
6. 청렴의무위반	파면	해임-정직	감봉	견책-주의
7. 품위유지위반 가. 성폭력(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)	파면	파면-해임	해임-강등	강등-정직
다. 그 밖의 성폭력 다. 성희롱 라. 성매매 마. 그 밖에 사항	파면 파면 파면-해임 파면-해임	파면-해임 파면-해임 해임-강등 강등-정직	강등-정직 강등-정직 정직-감봉 감봉	감봉-견책 감봉-견책 견책 견책
8.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	해임-감봉	감봉	견책	경고-주의
9. 회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	파면	해임-강등	정직	

- ※ 공금 횡령·유용,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·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※ 제7호가목에서 "업무상 위력 등"이란 업무·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.

[별표 3]

금품 등 수수(授受)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

(제49조 관련)

비위 수수 유형 행위	금액	100만원 미만	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	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	500만원 이상	
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 등	수동	감봉 정직 강등	강등 해임 파면	해임 파면 파면		
수수(授受)의 경우	능동	정직 강등 해임	해임 파면	면		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(授	수동	정직 강등 해임	해임 파면 파면		면	
受)를 하고 위법·부 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능동	강등 해임 파면	파면			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(授 受)를 하고 위법·부	수동	강등 해임 파면	파면			
당한 처분을 한 경우	능동	해임 파면	파면			

근로계약서

(제12조 관련)

인천메트로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를 "사용자"라 하고, 직원을 "근로자"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양 당사자

	대 표 자	사업자등록번호
사 용 자	사 업 체 명	
	소 재 지	
7 7 7	성 명	생년월일 -
근 로 자	주 소	

2. 근로조건

가. 근 무 지 :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장소

나. 계약기간 : 20 년 월 일부터

다. 근무내용 :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업무

라. 근 무 일 : 해당 부서장의 근무 명령에 의해 지정한 날로 하며, 탄력적 근

로시간제로 운영하고, 시업과 종업시간은 달리 할 수 있다.

마. 근무시간 및 연장근로 : 회사 「취업규칙」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.

바.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, 병가, 청원휴가 등은 「취업규칙」 및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다.

3. 임 금

- 가. 임금은 「보수 및 복리후생규정」에 따른다.
- 나. 보수지급은 매월 일에 지급하고, 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하다.
- 다. 임금의 지급은 본인이 청구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.
- 라. 근로소득세, 주민세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 등 법적 공제액은 수령 할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.

4. 퇴직 및 퇴직금등

- 가. 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게 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후 퇴직한다.
- 나. 퇴직금은 관계 법규에 따라 지급한다.

5. 계약해지 및 해고 등

계약해지 및 해고 등은 「인사규정」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다.

6. 그 밖에 조건

- 가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 「취업규칙」 및 노동관계법령, 단체협약서 등을 준용하며, "근로자"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민·형 사상의 책임은 "근로자"가 진다.
- 나. 최초 업무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본다.
- 다. 「인사규정」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 발생 및 채용비위 사실 확인시 본 계약은 무효로 본다.
- 라. 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본 계약서는 "사업주"와 "근로자"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. . .

사 용 자 : 인천메트로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(인)

근 로 자 : (인)

[별지 제2호서식]

서 약 서 (제12조 관련)

- 성 명:
- 생년월일 :
- 주 소:

상기 본인은 인천메트로서비스 주식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귀 사의 인사규정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.

20 . . .

위 본인 (인)

인천메트로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

	인사기	로카드	
	소속		
	직 군 성 명		
1. 기본증명서		6. 경력증명서	
2. 신원증명서		7. 채용신체검사서	
3. 병적증명서 . 주민등록초본	또는	신원조사회보서 8. (각서로 대체)	
4. 주민등록등본	- 🗆	9. 사진(반명함판)	
5. 최종학력증명	서 🗆	10.	
ଚ୍ଚୀ	천메트로서	비스주식회사	

원본대조필

인 사 기 록 카 드

사원번호					한	글				
주민등록번호			,	성명	한	자				
채용구분					영	문			사	진
소속				입시	·일자				(반명	함판)
직 군				급여	형태					
Step										
현부서발령일			현직·	급임용일				_		
신장			7	 체 중			Ö	 <u>]</u> 액형		
시력(좌/우)			ठ	 후대폰			집	 전화		
종교			Е	-mail						
				ı						
		유형		우딕	면번호			주소		
주 소	등록기준지		र ो							
,	주덕	민등록주	소	소						
	현주소									
	관	:계	く	l 성명	생년	월일	학	력	직장:	직위
	관		<u>خ</u>	성명	생년	[월일	학	력	직장.	직위
가족사항	관		そ	형명	생년	l월일	ই	럭	직장·	직위
가족사항	관		ż	方명	생년	l월일 -	ই	력	직장·	직위
가족사항	관		Č	명	생년	<u> </u>	ই	려	직장·	직위
가족사항	관	-계		명	생년			려	직장·	직위
		-계	필	명	생년		학 부 무	려		
가족사항 병역 사항	관하였	-계		명역종	생년 군별			쿠 군번		직위 제대 연월일
		-계	필				복 무			
병역사항	해당없음	-계	필 미필 사유		군별		복 무			제대 연월일
	해당없음	·계 미 체격 등위	필 미필 사유	역종	군별	병과	복 무	군번	입대 연월일	제대 연월일
병역 사항	해당없음	- 계 비 체격 등위	필 미필 사유	역종	군별	병과	복 무 계급	군번	입대 연월일 신고	제대 연월일 1일
병역 사항 보훈사항	해당없음	·계 미 체격 등위	필 미필 사유	역종	군별	병과	복 무 계급	군번	입대 연월일	제대 연월일 1일
병역 사항	해당없음	- 계 비 체격 등위	필 미필 사유	역종	군별	병과	복 무 계급	군번	입대 연월일 신고	제대 연월일 1일

	기간		학교	경	전	공학교	4		학위
학 력									
	재직기간		회사대	 경	담당업	무 및	직위	j	호봉가산여부
A) ())))									
입사전경력									
	자격종목	등급		발급	급일	자	격번호		발급기관
자격·면허									
, , _ ,									
	이그시 조리	<u> </u>	<u></u>	え) で	= ol	Ó -	효만료약	กไ	바그기키
	외국어 종류	등급/점	丁	分	투일	T	L U 五 %	2	발급기관
외국어능력									
	일자			종	·류			시	행기관
포 상									
	일자			종	류			시	행기관
3) _11									
징 계									

	기간	교육과정	교육기관	이수여부	성적
교육훈련					

특기사항

발령사항									
발령일자	구분	직급	부서 및 직위	담당업무	비고				

		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.
기록사항	본 인	년 월 일 성명
확 인		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.
	소속장	년 월 일
		인천메트로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생략

경고(주의) 처분통지서

(제44조 제3항 관련)

속 : 군 : 명 :						
		(내		용)		
		년	월		일	
					트로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	(1)